

#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. 17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. 17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. 22.(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 
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이종근)

### 가. 제안이유

- 피정2주거환경개선지구내(양지마을) 어린이집(보육시설)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(국,시비)보조 및 위탁운영근거 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용어의 변경, 영유아보육법 개정,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등 조례개정 사유 발생.

### 나. 주요골자

- 양지마을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포함  
(제2조 명칭 및 위치신설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용어 변경(제4조 1항 1호)  
생활보호대상자 →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표준보육단가 결정권한 변경  
보건복지부장관 → 시·도지사(영유아보육법 제24조)
- 보육위원회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(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기 제정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괴정2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보육편의시설인 양지마을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하여 급증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문제 해결 등 주민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시대적 필요충분한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
- 특히 보육시설의 설치·비용의 수납 등 용어의 정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